

입법의견조사 98-3

입법의견동향

주요쟁점 : 인권법 제정의견

1998. 12.

研究者 : 宋永仙(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1. 1990-1991

1990-1991

1990-1991

1990-1991

목 차

I. 조사목적 및 현황	7
II. 주요쟁점 : 인권법 제정의견	10
<참고자료> 법무부시안·법무부수정안·국민회의안·공추위안의 주요쟁점비교	
III. 분야별 입법의견(1998.7.1.~1998.11.30.)	23
◎ 헌 정	23
『국가기록물관리법(가칭)』 제정의견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 통일·외교	24
한일신어업협정 개정내용	
『재외동포의법적지위에관한특례법(가칭)』 제정의견	
◎ 내무·지방행정	25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방재대책관련 입법의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가칭)』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 문화·공보	32
방송관계법 개정의견	
◎ 교육·학술	34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평생학습법(가칭)』 제정의견	
◎ 노 동	35
교원노조합법화 관련 입법의견	

◎ 재정·경제 37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의견
- 『공사채등록법』 개정의견
- 『공인회계사법』 개정의견
-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의견
- 도산관련법제 주요 개정사항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보험업법』 개정의견
- 『상법』 개정의견
- 『상품권법』 폐지의견
-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의견
- 『선물거래법』 개정의견
- 세제개편안관련 입법의견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의견
- 『어음법』 개정의견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견
- 『외부감사법』 개정의견
- 『은행법』 개정의견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중개회사법(가칭)』 제정의견
- 『증권거래법』 개정의견
-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의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의견
- 『한국주택금융주식회사법(가칭)』 제정의견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통상·산업 64

- 안전관리규제관련 입법의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농림·해양	6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개정의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연안어장환경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건설·교통	68
『도시개발법(가칭)』 제정의견	
◎ 과학기술·정보통신	73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견	
◎ 환 경	74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의견	
『폐기물관리법』 개정의견	
◎ 보건·복지	76
『노인복지법』 개정의견	
『의료보호법』 개정안	
『화장품법(가칭)』 제정의견	
◎ 법원·법무	7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법무사법』 개정의견	
『변호사법』 개정의견	
『민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항목색인〉	83

I. 조사목적 및 현황

1. 조사의 목적과 분류방법

입법의견이라 함은 최종적으로 법령의 형태 즉,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시 반영되기를 원하거나 구체화되기를 원하는 입법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 특히 일반국민의 입법의견은 자신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영역에서 입법의 불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는 법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편 전문가의 입법의견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구체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의 입법관계자들은 특정한 분야의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우선 이에 대한 일반국민이나 전문가의 입법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의 입법수요를 가지고 있는가를 즉시 파악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책무를 진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법의 불비 및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여 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기능하며, 법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편익을 위한 법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입법의견은 입법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입법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목적은 일반국민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직접 체험적으로 느끼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견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입법관계자인 정부나 국회에 국민의 입법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국가의 입법정책 내지 입법과정에 기여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조사에서는 입법과 관련한 개인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며, 신문·방송·통신·출판물 등의 매체, 관련 학회의 세미나·시민운동단체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의견, 정부 부처·정당·각종 민간단체의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통하여 입법의견을 수집·분석한다.

입법의견은 조사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되고 정리될 수 있는 바, 먼저 국민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의 입법수요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분야별로 분류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다시 입법의 공백 내지 불비에 따른 법령제정의견과 법령과 현실의 부조화에 따른 법

령개정의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간행하는 대한민국헌법령집의 분류체제를 참조하여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입법의견을 분류한다.

[입법의견 분류기준표]

분 야	대한민국헌법령집해당항목
憲 政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統一·外交	제15권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國 防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一般行政	제3권4행정일반
內務·地方 行政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文化體育· 公報	제18권17문화·공보
教育·學術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6교육·학술(2)
勞 動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財政·經濟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通商·産業	제25권23통화·국채·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農林·海洋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建設·交通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I)권35수자원·토지·건설업(1), 제36(II)권35수자원·토지·건설업(2),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科學技術· 情報通信	제19권18과학·기술, 제46권43체신
環 境	제39(I)권39환경(1), 제39(II)권39환경(2)
保健·福祉	제37(I)권36보건·의사(1), 제37(II)권36보건·의사(2), 제38(I)권37약사, 38사회복지(1), 제38(II)권38사회복지(2)
法院·法務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2), 제9권9형사법

2. 입법의견 현황

입법의견조사 제98-3호에서는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11월 30일까지 각종 언론매체, 공청회,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각계 각층의 입법의견 총 57건을 접수하였다.

이하에서는 입법의견을 위 분류기준표를 참조하여 분야별로 헌정, 통일·외교, 국방, 일반행정 등 16개분야로 나누고, 이를 제정의견과 개정의견으로 재분류하였는 바, 아래의 표와 같다.

최근입법의견 현황

분 야	건 수	제 정 의 견	개 정 의 견
◎ 헌 정	2	1	1
◎ 통일·외교	2	1	1
◎ 국 방	.	.	.
◎ 일반행정	.	.	.
◎ 내무·지방행정	4	2	2
◎ 문화·공보	1	.	1
◎ 교육·학술	2	1	1
◎ 노 동	1	.	1
◎ 재정·경제	28	4	24
◎ 통상·산업	2	.	2
◎ 농림·해양	3	1	2
◎ 건설·교통	1	1	.
◎ 과학기술·정보통신	1	.	1
◎ 환 경	2	.	2
◎ 보건·복지	3	1	2
◎ 법원·법무	5	.	5
총 건 수	55	12	45

II. 주요쟁점 : 인권법 제정의견

1. 문제의 제기

1998년 12월 10일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인권법(가칭)』 제정의 방향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민회의, 시민단체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인권위원회의 설립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선정한 새정부의 100대 과제중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8년 4월 대통령 업무보고때 「인권위원회」 설립계획을 보고했고,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98년 9월 25일 인권법 시안발표와 설명회를 가졌다. 이 시안은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비롯한 성(性)이나 인종 등에 의한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권고-고발-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경 내부와 보수층 일각에서는 수사권 위축 문제나 인권위원회 설치에 90억 이상이 든다는 현실론을 내세워, 국민회의와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법무부 시안에 따를 경우에 독립적으로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가 가능할 것인가의 인권위원회 성격과 기능을 문제삼으며 좀더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인권기구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민회의-시민단체간의 논란이 계속되자 11월 5일 “유엔 권고안에 따라 인권법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게되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당정회의를 거쳐 법안을 수정하기에 이른다.

많은 이견들이 좁혀졌으나 논란의 핵심인 기구의 성격과 기능,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는 바, 각 쟁점사안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비교·분석하고 더 나은 입법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경 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인권법(가칭)』 설치는 이미 96년 이래 논의되어 왔던 것으로,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정부는 이를 국가정책 100대 과제 중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민회의와 민간단체가 각기 다른 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이론이 전개되고, 방한한 피에르 사네 국제사면위 사무총장도 “법무부 시안을 따를 경우 인권위의 독립성과 조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권고를 강화할 권위와 구체적인 관할사항이 매우 제약되는 결과를 가져와 인권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등 시안에 대한 수정이 요망되었다.

‘유엔 권고안’은 지난 92년 유엔총회를 통과한 인권보장원칙(파리원칙)¹⁾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가진 인권기구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 기구가 준사법적 기능까지 갖도록 권고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기구의 구성에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함하되, 정부부처 대표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문자격으로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권한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여 조정등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11월에 마련한 수정안은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하여 특수법인론을 계속 견지함에 따라서 국민회의 및 민간단체와의 갈등을 겪게 된다.

3. 쟁점사항

(1) 인권위원회의 형태

국가인권기구를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하자는 법무부의 주장과 독립 국가기관의 형태로 설립하자는 국민회의의 주장이 서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1) 인권보장및증진을위한국가인권기구의지위와역할에관한원칙(93) 및 유엔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구설립지침서(95)

유엔 권고안이 강조하는 점은 정부(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적·사적 기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률행위능력과 의사결정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독립된 법적지위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1. 인권기구의 기능과 구성

인권 관련 법률·정책·관행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인권기구가 정부와 의회 등에 자문·제안·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다원성 확보(정부(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정부관련 인사는 고문으로만 인권위에 참여할 수 있다.

3. 보충적 원칙

인권기구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해 개별 인권침해사건에 ‘조정’과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U.N., Center for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U.N., New York and Geneva, 1995).

① 법무부

인권에 관한 1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는 만큼 새로 구성되는 인권기구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감시·보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들과 권한 및 기능이 겹치지 않도록 권고적 권한을 갖는 민간 특수법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정부내 인권옹호 기능의 주무부처가 법무부인 바, 인권위가 이를 보충하는 기구로서 독자적 '법인격'을 갖추기 위하여서도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한다.²⁾

인권법수정안에서도 법무부는 인권위를 특수법인 형태로 하는 시안의 내용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할 경우 △여성특위 및 노동부 산하의 고용평등위와 기능이 중복되고 △감사원, 검찰, 안기부, 노동위원회 등 '사정기구'와 공권력 행사를 둘러싼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며 △장관급 8명을 포함, 최소 5백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② 국민회의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한 정책 권고와 교육·홍보 기능은 물론 사후적인 조사·구제 권한까지 갖는 종합적 기구를 상정하므로 인권기구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 법무부가 국민인권위를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치하여 그 위상을 약화시키고, 판·검사를 인권침해 행위자 소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은 문제가 있다. 특수법인의 인권위를 설치하게 되면 인권위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결국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막는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우선 인권위의 위상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겉으론 독립적 특수법인 형태지만, 인권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인권위원의 구성절차가 사실상 법무부의 산하기관처럼 되어 있어 독립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권위가 활동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한 것 등은 인권위를 법무부의 산하단체로 만들려는 의도이다. 또 법인으로는 현행 법체계상 예산의 독립성도 확보할 수 없다. 인권위원회의 성격과 관련, 강제수사권과 시정명령권을 가진 국가기구 또는 준헌법적기구가 되어야 한다.

2) 박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방향」 공청회, 98.11.6.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소환대상에 판·검사도 포함하며, 인권위에는 조사권만 부여하고 수사는 검찰에 의뢰하되 의뢰사항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한다.³⁾

③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민간 특수수법인으로 구성한다는 법무부 안은 인권침해의 논란을 겪어온 법무부가 이사회 구성과 사업내용 등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인권위원회는 방송위원회처럼 소속을 두지 않는 국가기구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④ 기 타

가. 특수법인론

○ 최성철 한양대 교수

인권보장에 관한 1차적, 최종적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고, 이를 감시·보완하는 2차적 책임이 인권위에 있는 것으로서, 인권위는 정부의 상위기관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정부가 규명하기 어려운 수사·정보기관 등의 인권침해를 감시·적발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인권보장기능에 허점이 있는 부분, 즉 '틈새'를 보충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인권위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위의 위상은 법인이냐 국가기구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권한과 독립성 정도, 운영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가기구로 설립된 인도, 인도네시아의 인권위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국가기구로 하면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감시·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관료적 특성 때문에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하기가 어려워 일부에서는 인권위가 강제조사·구제권, 즉 수사권과 시정명령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압수수색이나 구속은 검사가 청구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권위가 수사권을 가질 경우 검찰 산하기관이 될 수 밖에 없고, 시정명령권의 경우도 광범위한 전문조직을 갖추기 어려운 인권위가 최종적인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게 되므로 무리라고 본다.⁴⁾

3) 새정치국민회의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안)』, 1998. 12.

4) 한겨레신문 기획, 98. 9. 28.

나. 독립기구론

○ 박노현 방송대교수

일반적으로 특수법인은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중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할 산하기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법형식이다. 때문에 국가기관과 특수법인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 설립자와 피설립자, 감독자와 피감독자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기구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법무부와 국가인권기구의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법무부는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권한위임자, 곧 주무관청이 된다. 이 구도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본래의 고유한 권한이 없이 법무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뿐이다. 따라서 인권보장의 '주된 업무'는 법무부가 처리하고 '종된 업무'만을 국가인권기구가 처리한다. 하지만 국가인권기구가 법무부의 인권보장 업무의 틈새를 메워주는 보조적 구실을 할 뿐이라는 법무부의 '틈새기구론'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오해의 소산일 뿐이다.

국가인권기구는 법무부 등 기존 국가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기관의 외곽에 설치되는 하위 보조기관이 아니라, 법무부 등 기존 국가기관을 인권의 관점에서 견제, 견인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유형의 동급 국가기구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무부는 주무부서로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자 역할을 맡는다. 실제로 법무부안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의 정관 및 업무지침서 등을 작성할 권한을 갖는 설립위원회의 구성은 온전히 법무부장관의 몫이다. 이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처음부터 법무부가 의도하는 대로 법무부의 하위 보조 산하기구로 구체화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수권자이자 설립자로서 당연히 국가인권기구의 업무를 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국가인권기구를 특수법인으로 만들자는 법무부의 주장은 국가인권기구를 사실상의 법무부 산하기구로 만들자는 주장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법무부의 특수법인안은 국가인권기구의 관건이 되는 독립성 요구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으로서 이미 시민사회는 물론 집권 여당으로부터도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⁵⁾

○ 차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인권을 보장해오지 못한 우리의 법·제도·사회적 환경

5) 한겨레 신문, 1998. 12. 9.

속에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는 인권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권고나 명령형식을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침해행위 중지 등의 구제명령과 국가기관장에 대한 징벌요구등이 필요하다.⁶⁾

(2) 인권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부

법무부 시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이사회 존재가 필수적으로 그 구성을 보면, 법무부와 여성특위 등 4개의 관련부처 차관이 당연직 이사가 되고, 임명직 이사는 법무부장관이 7인 이내의 인사를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권법 수정안에서 인권위 구성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이사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인권위원은 법무부장관,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② 국민회의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친 뒤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장관급에 준하는 상임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인권위원 전원은 대통령의 추천과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권위원은 9~15명으로 하고 6년 단임으로 대통령이 추천하며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기 타

○ 김승환 전북대 교수

법무부장관은 이사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명채청권을 가짐으로써 이사회 구성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바, 인권위 구성에 법무부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⁷⁾

6)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방향」 공청회 발제, 1998. 11. 6.

7)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방향」 공청회, 98. 11. 6.

(3) 인권위 업무의 관할범위

① 법무부

법무부시안은 수사기관 직원과 군인, 다수인 보호시설 직원들이 행하는 8개의 인권침해행위와 성·인종·종교·장애·출신지역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인권위의 구제활동 대상으로 삼고 있다.

② 국민회의

국민회의 안은 인권위에 성적·인종적 차별행위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인권위 조사결과 차별행위와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되면 인권위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개인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년에 2번 정도 연간보고서와 특별보고서 형태로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중대사안일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보유해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회계감독을 받지만 직무감찰은 받지 않는 등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③ 시민·인권단체

개별적인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조사를 통하여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차별행위 조항에 사상, 정치적 견해, 전과에 의한 차별행위 등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 인권위원회의 권한

① 법무부

○ 박상천 법무부장관

검찰과 경찰, 안기부, 감사원, 교정기관 등의 공무원과 군인·군무원, 보호시설 직원 등이 불법으로 국민을 체포·감금하거나 고문을 한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하여 시정권고 또는 조정하거나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성별·인종·종교·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각종 불이익과 모욕·성희롱 갈

은 차별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등을 시찰한 후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전반적인 인권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불응 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 팍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

인권위는 국가의 기본적 임무가 인권보장이라는 점에서 감시·보충적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고 강제수사권과 시정명령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럴 경우 수사 와 재판의 기능을 가진 새로운 거대 권력기구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다. 국가기관이 되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검찰·경찰·안기부와의 기능중복으로 지속적인 마찰도 우려되고, 시정명령권을 지닌다면 법률상의 기구인 인권위가 다른 법률상의 기구까지 기속하게 되어 국가조직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⁸⁾

○ 기 타

인권위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할 경우 가해자가 불복하면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어 인권위의 권위가 추락할 수도 있다.⁹⁾

② 국민회의 및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권위 권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속력 있는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③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처럼 사실상 독립된 예산요구권을 지니도록 한다.

인권침해로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와 같은 직접적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개인 및 법인에게 형사고발을 통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인권을 침해한 국가기관은 상급 기관에게 그 기관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권한도 대상기관이 자료제출과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인권위원회에 파견된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지조사 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8)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방향」 공청회, 98. 11. 6.

9) 조선일보 98. 9. 26.

④ 기 타

○ 심영희 한양대 교수

조사불응시 제재방안으로 과태료 부과는 너무 미약하고 압수수색 등은 형법 기관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바, 적절한 대안으로 강제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되 조건은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⁰⁾

4. 맺음말

기존의 국가와 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새로운 『인권법(가칭)』의 제정은 불필요하였을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통한 국가권력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방어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자 국제연합은 과거에 없었던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인류의 권리보장을 실효성 있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인권법과 인권위원회는 근대 국가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자, 각국의 국민들이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 보편적 차원에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인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욱 더 국민이 주인이 되고 또 주인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10)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방향」, 공청회, 98. 11. 6.

〈참고자료〉 법무부시안 · 법무부수정안 · 국민회의안 · 공추위원의 주요쟁점 비교

항 목	법무부시안	법무부수정안	국민회의안	공추위원
명 칭	인 권 법	인 권 법	국민인권위원회설치법	인권위원회법
관 할	헌법,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	헌법,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과 관습법 및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자유	헌법,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
차 별 금지 사유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 14개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	차별사유에 정치적 견해 추가		법무부시안의 차별금지사유에 사상, 성적지향, 병력, 행형기록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키고 이를 예시적으로 열거
인 권 위 회의 위 상	재단법인, 위원과 별도로 이사회 존재	법인의 틀은 그대로 유지 정부가 이사회를 통해 인권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인권위의 운영상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폐지	국민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함	독립국가기구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규칙제정권 부여
위 원 임 명 의 방 식	정부차관 4인의 당연직 이사와 법무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임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위원임명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제1안 : 법무부장관 제청, 국회동의, 대통령 임명(단, 법조계·여성계·노동계·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자로 인권위원 임명하도록 규정 제2안 :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이 각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단,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인권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잘 반영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인권위원중 3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함	국회의 청문절차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항 목	법무부시안	법무부수정안	국민회의안	공추위안
위 원 임 기	2년(1차연임)	3년(1차연임)	4년(1차연임)	6년(단임)
법 무 부 와 의 관 계	법무부가 주무관청으로서 11개 조항에 걸쳐 위원회의 인사, 업무활동, 예산에 관여함	인권위원회의 주무부처로 인권옹호종합계획 수립·시행,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 협력 업무 담당	독립국가기관이므로 법무부가 인사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	독립국가기관이므로 법무부가 인사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
예 산	법인이므로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고, 예산회계법등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정부보조금지급에 대하여 법무부가 위원회의 사업내용을 심의하고, 보조금지급여부를 결정함	위원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대한 법무부의 조정 불가, 예산청에 의견제시만 가능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함	독립국가기구로서 감사원과 같이 예산편성시 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됨
조 직	이사회에서 감사 선임 사무총장을 대통령이 임명 사무처만 규정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사무총장을 위원장이 임명 사무처 이외에 조사관, 전문위, 인권도서관등을 별도의 조직으로 둠
업 무 의 주 요 내 용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관련 법령 등에 대한 권고, 인권침해행위 등의 조사, 구금시설 등의 시찰 등 7개 항목	인권 교육 및 홍보,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수사기관등의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8개 항목	인권관련 법령에 관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자문 또는 권고·의견표명 인권관련 법령의 제·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대해 권고·의견표명 등 9개 항목	법무부시안의 내용 이외에 인권지침제정, 인권상담 및 법률구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요인권관련 소송에 대한 의견제출 등 8개 항목 추가
조 사 대 상	8개의 인권침해행위와 4개의 차별행위	8개의 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행위와 4개의 차별행위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다른 국가기관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가능

항 목	법무부시안	법무부수정안	국민회의안	공추위안
조 사 방 법	서면조사가 원칙, 다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 출석 등 가 능	서면조사가 원칙, 다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 출석 등 가 능	당사자, 관계인에 대 한 출석요구 및 진 술청취권, 장소·시 설·물건에 대한 검 증 또는 감정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권을 인정	당사자출석, 자료제 출, 현지조사가 원칙
조 사 의 한 계	위원회의 조사는 국 가기능수행에 지장 을 초래하지 아니하 여야 하며, 자료의 제출이나 실지조사 의 경우 조사대상기 관의 장이 공무상 비밀, 국의 침해우 려,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 려, 사생활 침해우 려, 교정기관과 수 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가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조회만 가능	시안에서 교정기관 운영에 대한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를 제외	모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조 사를 할 수 있으나, 진정의 내용이 사실 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 진정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	다른 법률에 의한 제 한 이외에 다른 제 한이 없음
조 사 불 응 시 제 재 방 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제출요구나 현지 조사거부시 최후 조 사수단으로 위원회의 파견검사를 통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 하고, 출석불응의 경 우 형사처벌
심 리 절 차	규정이 없음	규정이 없음	규정이 없음	조사후 심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구 제 신 청 인 및 증 인 호 보	규정이 없음	규정이 없음	위원회에 한 진정, 진술, 증언, 자료등 의 제출을 이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함	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증언함으로써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함

항 목	법무부시안	법무부수정안	국민회의안	공추위안
임 시 구 제	규정이 없음	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 계속의 상당한 개연성과 회복이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속기관·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임시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위원회가 긴급한 경우 임시구제조치를 명하도록 함
결 정 의 효 력	구제조치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구제조치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	구체적 구제조치(침해행위의 중지등)에 대하여서는 구제명령을 내리고, 법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
인 권 침 해 방 을 위 협 의 무	규정이 없음	규정이 없음	규정이 없음	조사결과 장래 인권침해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할 의무 부과
위 회 결 정 이 행 시 조 치	규정이 없음	규정이 없음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법 위반 행위 및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위원회가 고발 및 징계요구를 하도록 함	개인(민간인, 공무원)과 사적시설의 경우 형사처벌,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
민 간 단 체 의 관	민간인권단체를 법무부에 등록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사용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를 받음	규정이 없음	위원회는 민간단체의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수행 및 공동수행하고, 민간전문가의 채용도 가능함	위원회가 중요인권사안에 대하여 청문회 및 정기협의를 통하여 민간단체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와 공동업무수행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자료 : 법무부 인권법 시안(1998.10.),
 법무부 인권법 수정안(1998.11.),
 국민회의 국민인권위원회설치법안(1998.12.),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인권위원회법안(1998.11.).

Ⅲ. 분야별 입법의견(1998.7.1.~ 1998.11.30.)

헌 정

『국가기록물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별도 관리기구 설치

대통령과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작성한 모든 기록물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관리기구에서 보존하기로 함. 특히 비밀로 분류된 비밀기록의 경우 비밀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공무원관련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사후 법적 책임의 근거를 남기며, 공공기관 기록물은 보존기관, 보존방법, 보존장소 및 공개여부를 분류하도록 함. 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물 관련 정책결정을 하는 중앙기록물 관리기관,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안기부, 육·해·공군 관련 특수기록물관리기록기관, 광역자치단체 관련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 자료관, 특수자료관 등으로 나눠 효율성을 제고함. 국가기록의 무단 파기, 훼손, 유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두기로 함(당정, 연합뉴스, 98. 8. 30.).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 법인세 1% 정치자금 검토

신진 개혁세력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정지구당수 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창당시 지역선거구 총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두도록 되어있는 제한규정을 완전 삭제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기부시 이사회의 의결과 주총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모든 정치자금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서만 제공하도록 함. 7조~9조원에 달하는 법인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발전자금'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가칭)』을 개정하여 불출석죄와 증언거부죄의 형량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함(국민회의, 98. 8. 27.).

통일 · 외교

한일신어업협정 개정내용

■ 한일신어업협정

한일간 신어업협정 체결 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어장이 크게 축소되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특히 일본 근해 조업은 현재의 절반 수준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같은 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중심으로 한 어업 구조조정 작업을 확대하고, 어획량 감소에 대비하여 양식어업개발을 확대하여야 함(조선일보 기획, 98. 9. 26.).

주요 내용	
동해 중간수역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에 한·일 양측이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을 설정함 - 중간수역은 양측 연안으로부터 35해리 폭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개의 직선으로 연결된 다각형 모양이며, 그 동쪽 한계선은 동경 135도 30분이 고, 서쪽 한계선은 동경 131도 40분(울릉도 동쪽 35해리점의 경도)임 - 대화퇴 어장(해저면의 돌기로 수심이 얕아 어장이 형성된 곳)의 반 정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됨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 중간수역에서는 기국주의를 실시함 - 동해 중간수역에서는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음 -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함

제주도 남부수역	- 제주도 남부와 규슈 서부 사이의 수역에 일정범위의 중간수역을 설정함 - 이 중간수역에서는 기국주의 원칙하에 자원의 공동관리를 실시함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국의 명태 조업은 협정 시행 초년도에는 1만5천 t으로 제한하고, 2차년도부터는 영으로 함. -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국의 대게조업은 협정시행 초년도에 기존실적의 50%를 감축함 - 명태와 대게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의 경우에는 3년에 걸쳐 한·일 양측의 어획할당량이 등량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조절함
불법 조업 단속	- 양국은 각각 자국의 국내법에 대한 위반 조업을 엄격히 단속함

『재외동포의법적지위에관한특례법(가칭)』 제정의견

■ 소관부처의 일원화

- 『재외동포의법적지위에관한특례법(가칭)』의 제정보다는 동포들의 요구사항을 개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소관부처도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하여야 함.
- 특례법은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거주국의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고안된 법인데, 영주권자는 여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완전한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를 재론할 필요가 없고, 다만 거주지가 문제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선거권에 관해서는 『선거법』을 개정할 것이지 재외동포의 지위를 운운할 필요가 없음. 결국 외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법을 제정하고자 함이나, 이는 민족주의 또는 국수주의 보다 더 비난받는 구세대의 산물임(이인탁, 미국워싱턴변호사, 법률신문 98. 10. 5.).

내무 · 지방행정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민간단체의 지원

-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운동단체의 분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총괄적인 지원은 부재한 실정이며 개별법령과 각 부처의 직제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이 행·재정상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구체적인 지원방식으로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라 부처별로 소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지정과제에 대해 사업자공모를 통해 해당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식 ▲각 부처별로 필요시 관련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해결해주는 방식 등이 있으나 이러한 기존의 지원방식은 ▲민간단체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지원기구, 세제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총괄적 지원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부처별 지원으로 야기되는 단체별 지원수준의 상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창구의 미약,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 개별법에 의한 특정단체지원으로 여타 단체와 지원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 정권의 지속은 성숙된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민간운동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간운동단체는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기존 일부 민간운동단체의 경우 그 활동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체결성을 주도하거나, 보조금지급을 수단으로 하여 운영방향을 사실상 결정함으로써 이른바 관변단체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바, 민간운동단체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민간운동단체를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하고자 함.
-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운동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사회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민간운동단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및 그 하부조직으로 공익추구를 목적으로한 비영리단체로 정의함(안 제2조). △민간운동

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민간운동지원위원회와 지역민간운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민간운동단체에 지원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민간운동진흥재단을 설립하고 동 재단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타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민간운동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7조). △민간운동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진흥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진흥재단의 이사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이 법에 의하여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임·직원 기타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되는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바르게살기육성법』 및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법률』을 각각 폐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 이상 박병석 새정치국민회의정책위원회 부의장,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자료, 1998. 10.

방재대책관련 입법의견

■ 방재기본계획

- ①실시간적으로 재해상황에 따라 각종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여 재해에 대처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로서 가칭 「재해통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바, 이의 구성인력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부위원장, 방재국장과 국립방재연구소장을 간사로,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예산청 등의 국가기관 대표와 사회기반시설분야(수리, 수문, 토질, 구조 등의 전문분야) 전문가, 대한적십자사, 방송언론사 등 국내외 전문가 다수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실무위원으로 구성함.
- ②하천 지류 및 분류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상류 댐방류

량을 결정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대피, 각종 복구인력 및 장비의 적절한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이를 시행하도록 정보를 제공함. ③『건축법』 등 각종 관련법규에 대해 치수예방차원의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며, 우수저류 및 침투유도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또한 개인주택 등 법의 적용대상을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도 일본과 같은 저류시설 설치권장 또는 유도하는 조례와 지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④ 방재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비는 재해발생후에만 적용이 가능한 예산항목이므로 재해대책비(가칭)와 같은 항목을 정규 예산항목으로 편성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함. ⑤재해예방사업을 통한 국가적인 경제성 제고가 인식될 수 있도록 국립방재연구소에 연구과제를 의뢰하도록 하고, 대국민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⑥현행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양여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사업에 방재관련 사업을 확충하도록 함. ⑦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한 재해기금 적립 조항을 확대·적용하여 재해가 적었던 연도의 예산 일부를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연도에 대비하여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함. ⑧방재관련 행정조직의 인력을 확충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소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화하도록 함. ⑨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 자율성은 제고하되 중앙과 지방간의 동일 업무에 대한 일관성있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재해, 재난 조직의 통일성을 확보함. ⑩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국립방재연구소의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적인 방재관련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⑪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방재관련 공무원들을 국립방재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며, 국립방재연구소를 통한 방재행정의 체계화 및 전문화의 기반을 확보하도록 함. ⑫현재 일부 실명제로 되어 있는 재해 사전점검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점검한 모든 구조물에 대하여 강력한 실명제를 실시함. ⑬『자연재해대책법』에 시설물설계를 위한 방재상위개념을 도입하여 설계·

시공하도록 조항을 입안함. ⑭방재상위개념을 도입한 시설물 평가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방재개념의 설계가 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함 (조원철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방재기본계획』, 국립방재연구소, 1998. 9. 3.).

〈안전관련 법과 담당기관〉

분야(10개)	예방관리법(18개 법률)	담 당 기 관	
		정 부	산 하 기 관
종합예방 시설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노동부 건설교통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	· 교통안전법 · 도로교통법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협회
소방안전	· 소방법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	행정자치부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안전협회
전기안전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산업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가스안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 유해물질 소음진동 안전관리평가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소음진동규제법	산업자원부 환경부 국무총리실	한국승강기안전원 환경관리공단

: 경제정책정보 98. 8. 10.

『정부출연연구
기관등의설립
및운영에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 법률안의 주요내용

출연연구원 55개를 5개의 분야별 연구회(경제사회, 인문사회, 기초과학, 산업기술, 공공기술) 산하로 편입시키고, 원장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2년마다 중간평가를 해서 연구회가 해임할 수 있도록 함. 개별연구원의 기능을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면서 인문사회계의 경우 6개 연구원의 유사기능을 통합함. 연구회는 개별 소속 연구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나 정부가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면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음. 국가정책상 특정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폐쇄할 수 있음. 종전에는 연구기관들이 목돈으로 연구사업비를 썼으나 과거 기준으로 인문사회계의 경우 50%, 과학기술계의 경우 60~70%만 주고 나머지는 부처로 직접 배정함(경제정책정보).

『지방자치법』
개정안

■ 주민참정권 강화

-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와 조례의 제·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를 도입함. 지자체의 행정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유권자의 50분의 1 또는 3,000명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20세이상 주민 2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행정자치부, 한국일보 98. 8. 6.).
- 부단체장의 단체장 직무대리 규정을 보완하여 단체장이 사망하거나 구속, 60일이상 입원, 선거입후보 등의 중대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행정자치부, 세계일보 98. 8. 6.).
- 지방자치시대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별시와 광역시, 도를 정부의 직할하에 둔다"는 구절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마다 지급되던 회의수당 이름을 회기수당으로 바꾸어 매월 일정액수를 지급되, 회의에 불참하면 그 날짜 만큼 액수를 줄여 지급하도록 함.

록 함. 지방의원이 60km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회의에 출석해야만 원격지 출석비를 지급하던 것도 가까운 지역에 사는 의원에게도 교통비 등을 지급하기로 함(행정자치부, 서울신문 98. 8. 6.).

-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법령의 범위안'으로 한정했던 것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로 변경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 등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법을 제정시 조례규를 범위확대 가능성을 높임(행정자치부, 문화일보 98. 8. 6.).

■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내용

- ① 20살이상 주민 20분의 1이상이 연서하면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단체장은 수리여부를 결정한 뒤 60일 안에 지방의회에 회부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와 사용료·수수료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 금전적 급부요구, 행정기구의 설치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반대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함.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무총리 소속 아래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갈등 사안에 대한 중재·의견조정·권고등의 기능을 수행함.
- ③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후에 읍·면·동의 경계조정이 가능하던 것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④ 지방자치단체 사무소를 옮길 때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사전협의로 완화함.
- ⑤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규정을 보완하여, 단체장의 △결위(사망, 사임, 퇴직) △구속 △60일이상 입원 △해당 단체장 선거 입후보로 인한 선거운동기간(16일)에는 권한대행자가 단체장의 권한전반을 대행하고, 단체장의 출장이나 휴가로 일시적으로 부재 상태일 때는 직무대리자가 위임한 사무나 지시한 사항을 처리함.
- ⑥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1년에 1차례 열던 정기회를 1년에 2차례로 변경하고, 정례회의 회기·집회일자는 조례로 정하되, 2차례 정기회를 갖더라도

현행 장기회 회기(시·도 40일, 시·군·구 35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⑦지방의회의원의 형(刑)이 확정됐을 때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소추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지함. ⑧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50분의 1 또는 3,000명이 상이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조례로서 청구주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⑨단체장 협의회 및 지방의회 의장협의회를 제도화하여 전국적 연합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 단체가 국회 및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⑩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경비지급은 현재 하루에 6만원씩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칭하고, 회의에 불참한 의원에 대해서는 불참일수 만큼 감액함. 현재는 60km이상 지역에 원격지 출석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근거리 거주 의원에게도 현지 교통비 등 일부를 지급하도록 함. ⑪지방자치단체장이 사임하고자 하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지 형식과 방법이 불분명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혼란의 소지가 있는 바, 통지할 때 사임일자와 그 사유를 기재함. ⑫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밖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퇴직(피선거권 상실) 하도록 함(행정자치부, 서울신문 1998. 8. 6.).

문화 · 공보

방송관계법 개정 의견

- 방송법 개정 의견
 - 종합유선방송(SO)과 중계유선방송간의 경쟁을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이 필요한 프로그램공급자(PP)채널만을 골라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1, 2년 뒤에 중계유선방송도 프로그램공급자(PP)채널을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법개정을 통하여 양 매체의 규제정도의 형평을 기함. 종합유선방송의 기존 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관련 법규와 관할부처의 단일화를 이루어야 함(김도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케이블TV산업 활성화
를 위한 정책토론회』 98. 8. 27.)

- 세계 각국이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지
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 논
리에 치우쳐 대기업의 방송산업 진입을 금지하는 역차별
규제를 하고 있는 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완화
가 불가피하고,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사 소유지분 한도
를 33%로 제한해서는 대기업의 자본참여를 기대하기 어
려우므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케이블TV 산업을 회
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전면 허용해야 함(전국경제인연합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문화일보 98. 9. 22.)

■ 한국방송공사법

현재 이사는 방송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이러한
이사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이사의 자격에
서 당원, 퇴직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등을 배제함.
사장이 부적격자인 경우에 면직하는 절차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임.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의견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방송위원회가 추천하
는 6명을 방송위원회가 위촉했었으나 방송문화진흥회 사무
처장을 단임제로 규정하고, 이사 10명을 모두 방송위원회
가 선임하도록 함. 시민단체등이 요구했던 방송계와 시청자
단체의 이사추천권은 포함하지 않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의견

정부출연기관이라는 위상에서 공사로 승격하면 정부가 추천
했던 이사를 방송위원회가 선임하게 되며, 사장은 교육부장
관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 이상 한국일보 기획, 98. 9. 5.

『사립학교법』

개정요건

■ 교수임용제 개선안

학과·전공별로 본교 또는 특정대학 출신자가 과도한 비율을 차지하지 않도록 대학전체의 교수점유율과 타대학 교수공급율을 지표로 대학별로 본교출신 임용제한 비율을 정하는 방식의 대학별 차등쿼터제를 도입함. 교수 신규임용과 관련한 도덕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용후보자의 서류·경력·학위 조작, 논문표절 등이 제기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고, 교수임용전후 3년간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교수재임용 탈락시 구제조치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립학교법』에 재임용 기준과 절차를 명시, 불공정 임용시 법적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교육부, 한국일보 98. 8. 24.).

『평생학습법

(가칭)』

제정의건

■ 평생교육기관의 부설·운영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고용주의 경비부담을 원칙으로 전문대와 대학(원)의 학력인정 등을 위한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을 부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에서 각종 취득자격 및 동일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취득시험관련 과목을 면제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방침임(교육부, 한국일보 98. 7. 2.).
- 근로자들의 계속교육과 재교육을 위해 자율적으로 각 직장이 유급으로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청소년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와 평생교육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평생학습기금을 조성함. 인간문화재 문하생에게 학력을 인정해주고, 교육계좌제 및 강사관리은행제, 평생교육기관의 법인화를 통한 세제혜택과 평생교육사제도 등을 도입함(교육부, 한국일보 98. 7. 3.).

교원노동조합법

화 관련

입법의견

■ 교원의 노동권 확대

- 전문직 단체의 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교원단체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교원의 노동권을 확대하여야 함(교총, 서울신문 98. 9. 5.).
- 현행 우리의 법 체계상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 노동조합도 당연히 『노동조합법』관련 조항의 개정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현재 공무원들의 노조인 철도노조나 체신노조 등이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노사정위원회 제1기 합의문에 분명하게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교원노조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합의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한 교원노조의 인정임. 이는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제5조가 국제적 노동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는 노사정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함(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 “교원노조 법제화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98. 9. 2.).

■ 교원노조 단협체결권 인정

- 정부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단협체결권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여, 예산과 법령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단협체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팽팽하게 대립해 왔으나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함(노사정위원회, 한겨레신문 1998. 10. 29).

〈교원노조 법제와 미합의 쟁점〉

구 분	정 부	노 동 계
입 법 체 계	1안 노동부주관 특별법 제정 2안 노동관계법 개정	노동관계법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단협체결권 인정. 단, 예산·법령 관련 체결권은 제한	단협체결권 인정. 단, 예산·법령 관련 체결권은 제한하되 성실히행 의무규정
교 섭 구 조	사립의 단위학교 교섭 불가	사립은 단위 사학재단과 시·도단위 노조등 대각선 교섭 허용
교 섭 사 항	임금·근무조건·복지등 교육정책·교과과정등은 제외	자율(정부안 긍정 검토)
교 섭 창 구 단 일 화	비례대표제 수용가능	자율(비례대표제)

-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전교조 합법화 방안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교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권만 인정할 것임. 단체협약사항 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예산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교섭권을 인정할 방침이고, 전교조의 주장을 수용하여 교원단체의 복수화를 허용할 방침으로 교원단체가 복수화할 경우 현재 유일한 교원단체인 한국교직원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장 중심의 단체로 발전하고 일반 교사 중심의 다른 교원단체가 생겨날 것임(이해찬 교육부장관, 동아일보 98. 10. 25.).

『공공자금관리
기금법』
개정 의견

■ 국민연금기금 의무예탁의 단계적 축소

현행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에는 국민연금기금등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의무예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한 자금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하여 재정융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SOC, 중소기업관련 공채인수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의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것이 연금기금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바,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의무예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을 중단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민연금기금 이외의 기금들은 이들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과정에서 조달과 운용상의 기간불일치에 따른 조정 등이 필요한 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지속할 계획이고, 이미 공자기금에 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의 자금은 상환연장 없이 예탁시에 교부된 예탁증서에 정한 상환시기에 틀림없이 상환될 것임(재정경제부 국고국 재정융자과, 98. 10. 2.).

『공사채등록법』
개정 의견

■ 인가제도 폐지

공사채 등록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인가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정비함. 이를 위하여 그동안 공사채등록업무의 영위가 재경부장관의 인가에 의하던 것을 금감위에 등록함으로써 가능하게 하고, 공사채 발행조건에서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등록채권자의 등록말소청구를 제한하여 채권실물발행을 억제함. 공사채등록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징구시 금감위 인가를 폐지하고, 등록기관의 법령 위반시 재경부장관이 인가 취소하던 것을 금감위가 등록취소 하도록 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공인회계사법』
개정의견

■ 보수상한 승인제도 폐지

공인회계사의 보수상한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며 회계법인 설립인가를 등록제로 전환함. 공인회계사회의 복수설립을 허용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의견

■ 인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

담보부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하여 담보부사채신탁업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 및 담보부사채신탁회사에 대한 겸영업무 허용 등 규제를 정비함. 담보부사채신탁업은 재경부장관이 인가하던 것에서 금감위에 등록함으로 가능하게 하고, 담보부사채신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감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금감위는 신청서에 하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함. 인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금감위가 신탁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업무정지명령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경우 등기소가 금감위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함. 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한 겸업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도산관련법제
주요 개정사항

■ 도산관련법의 주요 개정사항

- 98년의 도산관련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회사정리절차에 기업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에 기초한 "경제성"의 개념 도입 △화의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화의신청기각 특례 신설 △회사정리절차의 최장 변제기간을 인가후 10년으로 제한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회사정리·화의의 일부절차에 법정기한 설정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 제도 신설 △회사정리절차의 주

식소각 제도 보완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진행, 절차의 투명성, 실현가능한 재건계획의 수립, 효율적인 청산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재건가능한 기업은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살려내고, 부득이 파산시켜야 할 기업은 최상의 가치로 적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함.

- 절차간의 이행지연에 따른 문제 해소방안으로 현행법의 회사정리절차가 회사정리, 화의, 파산 절차중 일단 하나의 절차를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절차진행중 다른 절차로 바꾸려면 다시 처음부터 다른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바, 현재 도산 관련법을 통합하거나 절차진행중 다른 절차로 이행할 경우 기존절차를 인정해주자는 주장도 있음. 현실적인 대안으로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 상호간의 이행문제는 보전처분의 생략 및 개시결정 기간의 단축을 통하여 절차지연을 최소화하고, △회사정리절차로부터 파산절차, 화의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의 이행문제는 청산형 정리계획 또는 청산형 화의조건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절차를 속행하면서 청산절차를 이행함.

- 개시여부 결정기간을 단축하여 개시신청(회사정리의 경우, 채무자 신청에 한정)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단, 등기, 등록 등 공시가 필요한 재산에 관하여는 신청 직후 법원을 통하여 공시에 필요한 절차 진행), 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 및 법원 허가를 거쳐 신청취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채권자 등이 개시신청의 「자동정지(automatic stay)」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개시여부 결정은 신청인의 소명자료, 대표자심문, 공장검증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결정함.

: 이상 『부실기업 재건 및 정리촉진방안』 공청회, 「부실기업의 재건 및 정리를 위한 법제의 개선」 98. 9. 9.

『독점규제및공
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의견

■ 공정거래법 개정권고안의 주요내용

〈법적용 대상사업자 확대〉

현재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12개 업종을 지정해 법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자에 적용함에 따라서 행정기관도 사업성격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받지 않았던 금융·보험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음.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공정위가 매년 말 업종별로 대상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가중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전지정제를 없애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처벌함. 이로써 전국단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아니지만 특정지역 독과점 폐해를 일삼는 사업자도 규제가 가능함.

〈집행기능 효율화〉

공정위에 '현장출입권'을 주어 무단주거침입 따위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제거함.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소비자나 경쟁사업자가 당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때는 공정위법원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 있을 때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시정수단으로써 실효성이 없는 만큼 앞으로는 매일 200만원 한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몰도록 함. 현재는 검찰고발이 유일한 제재수단인 기업결합 신고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부과제도를 도입하여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처리함.

〈관계법령 정비〉

현재 다수 개별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 카르텔은 『카르텔 일괄정리법(가칭)』을 제정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경쟁제한 행위(경성카르텔)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1차산업생산자단체를 제외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민법』상 조합 및 임의단체 조항에 설립근거를 둔 단체는 앞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혜택을 받지 못함.

구 분	주 요 내 용
집행기능의 효율 화와 제재수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출입권 확보 - 영업비밀 자료제출 및 보호강화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이행강제금 부과 - 기업결합 신고위반에 대한 벌금 대신 과태료제 도입 -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에 임시중지명령 신청
공정거래법 적용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용 대상 사업자를 업종구분없이 포괄적으로 규정 - 독과점사업자에 금융·보험사업자도 포함해 규제 - 가격담합·시장분할 등 경성카르텔은 당연 위법 - 경쟁제한적 법령의 협의요청권을 공정위에 부여 - 농·임·어업 등 1차 생산자조합만 법적용 제외 -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도 부당하면 법 적용
시장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과점사업자 사전정지제 → 시장지배력 추정제 도입 및 시장지배력 행사여부 판단 -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당연 위법시하지 않고 경쟁제한효과 감안해 위법성 판단하도록 변경. 도서정가등 저작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예외허용 조항은 삭제 -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시적 열거방식으로 포괄규정
심결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 심리의결은 공개, 합의과정은 미공개 원칙 -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전환(곧바로 행정소송 가능)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는 주식취득도 사전 신고 - 20%이상 주식취득 후 최대출자자가 아니라도 추가 주식취득으로 최대출자자가 되면 재신고 의무 부과 - 기업결합 사전심사 요청대상에 대규모 회사도 포함 - 기업결합 예외인정 판단기준 개선 : 국민경제적 이익이 경쟁제한 폐해보다 큰 경우 - 영업제한 등 시장행태를 제한하는 시정명령제 도입
소비자보호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광고법 제정(소비자에게 주요 정보제공, 광고실증제,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등)
유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추적권 도입 -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공정위 직무수행의 독립성 규정

■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지주회사 허용방안

-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폐해방지 즉, 경제력집중 억제에 위한 제한요건을 설정하고,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수립함. 공정거래법개정안에서 ①지주회사의 허용요건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100% 이내로 제한하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영업부문을 자회사로 독립시키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분사화)에는 부채비율제한을 1년간 유예하고, ②지주회사는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타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므로 부채가 주된 자금조달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우리의 경우 금융기관의 기업경영감시 기능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채비율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부채에 의한 과도한 계열기업 확장이 초래될 수 있는 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최소 50%(기존 상장 자회사는 30%)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되, 분사화를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소유주식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함. ③현재와 같이 낮은 지분율에 의해서도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지배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경제력집중의 심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관련다각화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④부채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회사를 통한 과도한 계열기업 확장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⑤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를 분리하여 1개 지주회사가 금융·비금융 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함.
-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국제기준과 다른 우리의 지주회사 금지제도가 외국인투자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하여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라도 조속히 허용해 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지주회사는 경제력집중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반면, 사업조직의 재구축, 사업의 분리 매각, M&A 활성화 등의 순기능이

있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력집중의 소지를 제거하고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부채비율, 자회사지분을 등 엄격한 요건을 두어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므로 기업은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사업의 분리 매각, 지주회사를 통한 외자유치, 유사업종 계열사의 효율적 관리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고, 지주회사를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악용하지는 못할 것이고,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은 지주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관행에 부합하므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지주회사 허용요건의 강화 여부>

①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조달 금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100% 의무화, 대규모기업집단 설립금지 등 지주회사 허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주회사의 부채조달을 금지하면 지주회사가 일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채조달이 불가피하며, 외국사례를 볼 때 이를 금지할 실익과 명분을 찾기 어렵고, 자회사의 증자를 시급히 추진하거나 당초 계획 이상으로 자회사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부채조달 금지는 신속한 증자재원조달을 제약하여 자회사의 증자에 애로사항이 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합작지주회사 설립을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게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음. ②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100%로 하는 경우 자회사에 대한 외국인등과의 합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외자유치를 저해하고, 자회사의 상장이 불가능해지는 등 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바, 50%이상의 지분율은 필요시 외국과 같이 세계를 통해 유인할 필요가 있음. ③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금지의 경우 제한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한 바,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가 됨. 현실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임.

〈지주회사의 상속세 절감 가능여부〉

일부 지적과 같이 재벌오너의 소유주식을 그대로 상속시키기 보다 동 주식을 지주회사로 이전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상속시키면 현행 세법상의 주식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분적으로 절감할 수도 있음. 즉, 지주회사가 일부 부채를 조달해 지주회사 주식의 수익가치를 “0”으로 만들 경우에는 지주회사 주식의 가치는 자회사 주식가치 보다 낮아지므로 상속세 절감이 가능함. 그러나, 지주회사는 오히려 절세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음. 재벌오너가 자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서 실적이 나쁜 자회사 주식을 골라 증여함으로써 항시 저가로 증여하거나, 특정 계열사의 주식을 재벌 2세에게 증여하고 사후에 다른 계열사의 부를 동 계열사에게 이전시키는 변칙 증여가 가능하나 지주회사 경우는 일괄상속이 불가피하여 이러한 변칙상속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 결과적으로 상속인은 부채까지 상속받는 셈이 되며 배당소득도 감소하므로 실질적인 상속세 절감효과는 거의 없게 됨. 다만, 지주회사 주식을 수익가치까지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상속세법시행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대처할 수 있음.

〈회사법,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 여부〉

지주회사를 허용할 경우 소수주주의 권리 침해, 노사협상 곤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주회사의 법적지위는 현재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법인대주주에 불과하므로 지주회사 허용으로 『회사법』 등의 개정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자회사의 소수주주 보호문제, 지주회사에 대한 노동법상의 사용자 지위부여 문제 등은 일반적인 “모회사-자회사”간의 문제로서 “지주회사-자회사”간에 한정된 문제는 아님. 특히, 이러한 문제는 기존 재벌그룹과 같이 총수 1인이 다수의 계열기업을 지배하면서 그 지배구조가 투명치 못한 경우에 심각하게 발생하나 법개정(안)에 따른 지주회사 구조는 현행 재벌의 소유구조보다 투명성이 높으므로 오히

려 이러한 행위가 억제될 것임. 한편, 총수가 주력계열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지주회사를 허용하면 총수가 지주회사의 대주주로 남게 되어 경영책임을 묻기 어려워져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총수의 경영책임문제는 『상법』상의 '사실상의 이사제도'로 해결할 사항이며, 이는 지주회사 허용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음. 총수가 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되어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의 허용으로 소수주주의 권리가 더욱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음.

〈구조조정을 위한 지주회사 허용요건의 완화여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00%이내, 자회사 지분을 50%이상 등의 제한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소수주주 금융기관 등 기업내외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허용요건을 완화할 경우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초래할 수 있음. 결합재무제표(2000년 작성)가 정착되지 못하고, 사외이사 선임, 대표소송요건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호지급보증이 완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 상황은 아님.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한 기업경영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채비율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부채를 동원하여 계열확장을 도모할 우려가 있고, 자회사 지분을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낮은 지분율에 의한 계열확장을 초래하게 됨. 법개정안의 제한요건은 위와같은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으로 선진국과 같이 기업경영이 투명해지면 기업 스스로 갖출 수 밖에 없는 요건이므로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임. 한편, 법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를 활용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부문을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지주회사로 전환(분사화)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 및 자회사 지분율의 제한을 1~2년 적용 유예하고 있음.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채무보증 사전 해소 요건이 기존 공정거래법 규정과 중복되는지 여부>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등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주회사 및 자회사와 관련된 채무보증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는 이유는 기업의 매각 또는 외국자본의 유치 등 기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있는 계열사간 복잡한 상호채무보증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으로 얽혀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허용하더라도 분사화에 의한 구조조정 등 지주회사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중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은 공정거래법상 기존 일정(2000. 3월까지)에 따라 해소하도록 하였음.

: 이상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토론회 자료, 1998. 9. 18.

- ①현재의 사업지주회사들이 자회사주식을 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는 외부자본(예컨대 차입자본 또는 외국인 투자자본)을 조달하여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거나 출자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제한(지주회사 부채비율 100%이내, 자회사 지분율 50%이상)하에서도 경제력 집중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음. ②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더라도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거나 더 많은 자회사를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 부채비율의 100%이내 제한 효과가 의문시 되는 바, 지주회사 및 자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함께 제한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을 것임. 순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배당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어차피 부채비율 규제가 불필요하고 사업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③지주회사가 여유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다면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또는 이를 반드시 직접 규제해야 하는지가 의문시 되는 바, 미국식

으로 세제의 개편 및 자회사 외부주주의 권한 강화에 의해 100% 소유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④공개기업인 자회사들에 대한 시장 규율(적대적 인수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주회사마저 비상장기업으로 남게 되면 현재와 같은 재벌 총수의 전횡이 계속될 것인 바, 자회사 중에 공개기업이 있는 한 지주회사의 공개 유도와 적절한 지배구조 규제가 필요함. ⑤지주회사 설립의 큰 목적이 자회사간 상호보조의 불식과 자회사의 독립경영에 있으므로 이들간의 거래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대책 마련이 필요함. 전체적으로 직접규제보다는 세제 등에 의한 인센티브 효과와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및 공정거래 정책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바람직함(정광선 중앙대교수,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토론회 자료, 1998. 9. 18.).

<지주회사 허용안의 골자>

①외국인투자사업의 경우외에는 순수지주회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8조를 삭제하였는 바, 누구든지 소정의 요건만 갖추면 사전 신고만으로 순수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기존회사도 순수지주회사로 전환이 가능함. ②순수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부채를 순자산의 100%까지만 보유하여야 하고(기존회사의 경우 1년 유예), △자회사의 주식을 적어도 50%(기존상장사의 경우 30%) 보유하여야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이외의 계열사주식의 보유를 금지하고(2년 유예) △금융, 비금융회사의 동시 소유를 금지하며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보유를 제한 함(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손자회사 및 동료자회사의 지분보유는 허용, 2년 유예). ③이상의 제한 이외에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그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조기해소를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④사업지주회사의 출자에 대한 규제(출자총액제한)는 철폐함(김주영 변호사, 참여연대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토론회 자료, 1998. 9. 18.)

〈지주회사허용의 문제점〉

①재벌에 대한 출자규제는 당분간 존속시켜야 할 것으로, 재벌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 내지 확장, 문어발식 다각화 및 선단식 경영으로 다각화된 독점구조의 형성, 총수 중심의 1인 지배체제가 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이러한 재벌구조는 독립 대기업의 출현, 중소기업의 발전 저해 및 우량재벌기업의 부실계열사로 인한 경쟁력의 하향평준화등 문제점을 야기해 음. 재벌구조를 개혁하여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재벌개혁의 요체로 결국 적법한 이해관계자인 금융기관 및 주주들의 견제와 시장질서 확립 역할을 주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당하여야 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상호지급보증을 완전히 금지하고 기존 상호지급보증도 2000년까지는 해소하도록 한 것,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하여 과징금을 부과해 한 것은 이러한 재벌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바람직한 조치하였으나 이러한 부당내부거래조사와 상호지급보증해소만으로는 재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순수지주회사 허용 반대론〉

순수지주회사 허용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과 더불어 재벌 개혁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조치로 구조조정은 순수지주회사와 거의 무관하며 현재 허용되어 있는 사업지주회사등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함. 현시점에서의 순수지주회사 허용은 경제력집중(재벌의 이중적 독재체제)을 강화시키며 재벌총수의 책임추궁을 어렵게 하므로,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한 종래의 규정은 마땅히 존속되어야 함. 만약 그것이 곤란하다면 공정위가 마련한 허용 요건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①일정규모를 초과하는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배하의 지주회사를 금지하여야 하고, ②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도록 하고, 자회사간의 순환적 주식보유도 완전 해소시켜야 하며 ③지주회사 자체는 부채가 없어야 함을 명시하도록 함(김기원 방송대 교수).

: 이상 참여연대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토론회 자료, 1998. 9. 18.

『보험업법』

개정 의견

■ 보험회사의 영업허용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및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감위 및 금감원장 감독명령의 발동요건을 구체화하고, 재경부장관의 인가로 보험회사의 영업을 가능하게 함. 보험회사 임원선임시 보험회사·국가·공공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요건을 폐지하고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이 당해 보험회사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함. 금감위의 보험중개인에 대한 허가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보험회사 점포설치시 금감위에 사전신고하던 것을 금감원에 사후보고하도록 함.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상법』

개정 의견

■ 자산·부채 실사 정보 공개

회사정리 및 화의신청 기업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보고서가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 개시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되어야 하고, 법원에 공시실을 설치, 관련자료의 경중에 따라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함. 부도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채권은 거래처의 중소기업 여부와 해당 채권의 부도발생일 전후 여부에 관계없이, 부도어음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 기업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 진행,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등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를 인정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워크아웃 등의 협약에 의해 추가대출하는 경우 동일인 대출 한도 예외를 인정하여야 함. 금융기관의 경우 주식투자 한도와 유가증권 총액투자한도가 규제되어 있으나 앞으로 출자전환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 재평가의 경우 자산 재평가세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

할 필요가 있음. 부실기업의 가공채권등 분식결산에 대한 책임은 형사상의 책임으로 소추하고 세법상으로는 기업에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함(윤종규 회계사, 「부실기업 재건 및 정리촉진방안 공청회」 발제문, 국민회의 주최, 서울신문 98. 9. 9.).

■ 도산법제 통합으로 파산절차지연 최소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부실기업이 급증하면서 회사정리나 화의를 신청하는 기업도 늘었는데, 현행 법에선 법정관리, 화의, 파산절차중 하나를 선택해 절차를 진행하다가 다른 절차로 바꾸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됨. 장기적으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처럼 도산법제의 통합 또는 본격적인 정비작업이 필요함.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인 운용을 전제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회사정리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함. 보전처분의 생략 및 개시결정 기간의 단축, 주식소각제도 개선, 관리인의 경영능력 제고, 구주주의 경영참여 기회제공 등을 통해 회사정리절차를 변경하여, 화의절차로 몰리는 기현상을 치유할 수도 있고, 회사정리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 이행할 때 각종 절차를 속행하면서 청산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절차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3~6개월정도 걸리는 법원의 절차개시 결정기간을 1개월 안팎으로 줄여 절차지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갈 수도 있음. 회사정리절차 개시후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에 대한 엄정한 실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채권자와의 채무상환조건 협상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함으로써 실현가능한 부채상환계획(채무경감, 출자전환, M&A 등)이 수립되어야 함. 구(舊)주식의 강제소각제도 개선, 관리인의 경영능력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 구주주에 대한 경영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현행 법정관리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의신청 폭증현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고, 회사정리절차에서의 구주(舊株) 소각문제와 관련, 부

채'와 '자산'의 개념 및 그 산정방법을 대법원 예규 등에 명시하고, '부실경영책임'에 대해서는 사정(司正)제도 및 『형법』, 『상법』상의 규정을 통해 묻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한민 변호사, 「부실기업 재건 및 정리촉진방안 공청회」 발제문, 국민회의 주최, 서울신문 98. 9. 9.).

『상품권법』
폐지의견

- 정부규제 철폐
상품권 발행·유통과 관련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상품권 소비자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 『상법』, 『소비자보호법』 및 『형법』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보호함. 『상품권법』에 따라 이미 발행된 상품권의 발행자·구매자·소지자 및 이들 간의 모든 법률관계와 법률상 책임 및 지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의견

- 경영의 자율성 제고
상호신용금고 경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①금고인가후 3월내 영업 미개시시 인가효력 상실규정을 폐지하고, 영업의 인가, 합병, 해산, 자본금 감소 등 인가받은 사항의 공고의무를 폐지함. ②영업일부의 양수도 또는 폐지의 경우 금감위가 인가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함. ③상호신용금고의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이 현행 2년인 것을 폐지하고, ④금고연합회 임원을 연합회장의 의견을 들어 금감위가 위촉하던 것에서 연합회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하도록 함. ⑤금고의 출자자에 대한 우회대출을 금지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선물거래법』
개정 의견

- 영업양도의 사전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완화
선물거래업자가 영업일부를 양도할때 사전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완화하고, 선물거래업자의 수탁재산 분리보관의무를 신설해 선물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함. 선물거래소내의 회원거래 강제의무를 폐지하고, 선물거래소의 이사장과 감사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선임권을 폐지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세제개편안관련
입법의견**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는 공평과세를 포기한 것이고,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다수의 저소득계층으로 하여금 응능세율보다 높은 분리과세 세율(20%)을 부담하게 하는 점에서 역진적인 것이며, 금융실명제의 후퇴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로 인하여 음성·불로소득의 척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마땅히 부활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기존의 4,000만원에서 대기업 평균임금수준인 2,500만원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천징수시기는 이자의 발생시기와 일치시키도록 함.

■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양도소득세는 본질적으로 거래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거래세가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결국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여야 하고,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매력을 느끼도록 취득시의 각종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는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하면서, 세수부족을 야기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고, 부동산 투기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음. 근본적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도소득세가 가지는 동결효과를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으로 인하여 3년간 의무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동결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을 폐지하되, 1세대 1주택에 대

한 과세로 실질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동결효과를 심화시키므로 폐지되어야 하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점을 피상속인 내지 증여자의 취득시점으로 간주하여 상속 또는 증여시에 자본이득의 일부가 비과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불합리를 제거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도입
개인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는 과세자료를 통하여 개인사업자들의 거래가 포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거래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거래자료가 수수되어야 하며, 그 거래자료가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과세자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일단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하여 소득공제 내지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과소비 조장을 막기 위해서는 사치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배제하고 1회 사용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공제를 배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함.

■ 부가가치세제의 개편방안

①전문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담세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 바, 이들 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직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②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는 본래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착을 저해하고, 근거과세로의 이행을 가로막는 주범이 되고 있는 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고, 세금계산서 제도를 보완하고, 신고제도를 보다 간편화하여 점진적으로 과세특례제도까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소득세 과세방식의 전환

현재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은 포괄적인 정의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포괄주의 방식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수준에 따른 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전제로서 과세소득의 규정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임.

■ 기업접대비 관련 규제 강화

접대비에 대해서는 정규과세자료, 즉 사후적인 검증이 가능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3가지만을 증빙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접대비가 부정부패비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접대비지출명세서에 접대받는 자의 성명, 회사명, 직책을 기재하여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뇌물성 접대를 막고, 과소비와 향락산업의 비정상적인 팽창을 유발하는 호화 사치성 접대를 막기 위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상 참여연대, 세계개혁에 대한 의견서, 98. 9. 1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사전신고제 폐지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허가내용중 자본금 증액, 임원변경, 설비·인력변경, 본점소재지변경 등 경미한 사항변경시 재경부장관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폐지함.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시 재경부장관이 인가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지정·등록제를 등록제로 일원화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의견

■ 조합원명부 비치의무 폐지

신용협동조합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 설립인가 후 3월내에 미등기시 인가효력 상실규정과 조합원명부 비치의무를 폐지함. 조합원의 출자금 양도시 조합이사장이 승인

하는 것과, 이사회 결의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던 것을 정관으로 정함. 조합의 차입대상기관을 현재 금융기관 및 신협중앙회에서 예금보험공사도 추가함. 조합의 자기자본에 결손금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조합의 업무에 외국환 및 중앙회의 대리업무를 추가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어음법』
개정 의견**

■ 어음제도개선 정책대안

어음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단기적으로는 어음의 과다한 발행, 장기어음 및 신용도 없는 어음 발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음의 점진적·자동적 소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함. ①당좌개설 및 사후관리 개선을 위하여 당좌개설신청 대상자는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②당좌거래 유지요건 개선을 위하여 자본잠식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최소 1년 이상 적자상태에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채비율이 동업계(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소분류 기준) 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하인 자로 강화하고, 위의 요건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용조사를 거친 후 신용상태불량 판정시에는 1년간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1년후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당좌를 강제해지하도록 유도함. ③어음의 배서·양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어음배서를 4단계까지 인정하고, 『어음법』상 배서없는 어음의 양도는 불가능하게 함. ④부도기업의 제재기간을 연장하여, 당좌거래 금지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신용불량정보관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여신전문금융
업법』 개정 의견**

■ 신고의무등의 폐지

여신전문금융업 경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허가·등록요건중 실효성이 없는 일부 대주주 결격사항을 삭제함. 상호·자본금·임원 등의 변경 혹은 합병·파산 등으로 영업을 폐지한 경우 등 주요변동 사항에 대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호중에 여신전문금융회사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하던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선임에 대한 금감위 승인권 등을 폐지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의 공시 근거를 마련함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외부감사법』

개정 의견

- 금융기관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결합재무제표 대상에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바 연결재무제표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 경우 30%이상 주주가 없는 은행을 제외하고 보험사와 종합금융사, 증권사, 투신사, 리스사, 상호신용금고,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파이낸스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 60억원 이상의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이 포함된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함(증권감독원, 98. 8. 10.).

『은행법』

개정 의견

- 은행경영의 건전성 제고
 향후 은행의 부실채권 발생을 방지하고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 절실하므로 은행의 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소유권에 바탕을 둔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①대주주의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여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고, 대주주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대주주 여신제한 및 감독기준의 강화를 전제로 은행의 주식보유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소유권에 바탕한 책임경영의 여건을 마련함. ②소유제한의 완화와 동시에 경영구조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여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은행경영에 있어서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 ③은행을 이용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중여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동일인·동일계열 여신한도 제도 및 거액여신총액한도 제도

등을 정비함. ④재벌의 은행소유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설정된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명료한 정비를 위하여, 대주주 자격요건으로서 계열 자기자본비율을 30대 계열 평균을 기준으로 하거나, 1~5대 계열의 주주대표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상대적 기준을 지양하고, 가급적 절대적 기준으로 전환하여, 단순히 계열의 “외형규모”만을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재무구조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는 제도를 마련함(한국금융연구원, 「은행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발제문」, 98. 10. 21.).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주택저당채권의 증권화

①금융기관·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토지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 ②주택저당채권을 증권화하여 장기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고, ③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판매한 후 당해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자산유동화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의 주요 골자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자산을 기초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자산의 관리·운용에 의한 수익으로 그 증권의 원리금 등을 지급하는 자산유동화업무는 이 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자산유동화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미리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 등록을 한 때에는 『민법』상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저당권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함. △성업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및 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제

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한 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등록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보유자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하되, 본점외의 영업소를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게 하고,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게 하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출자증권 및 사채를, 신탁회사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출자증권, 사채 및 수익증권의 발행총액은 유동화자산의 총액을 한도로 함(국민회의 보도자료, 1998. 8. 4.).

『주식회사외부
감사에관한법
률』 개정의견

■ 공시책임의 강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감사해임권고권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확대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는 처벌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확충하고 불성실공시를 했을 때는 처벌을 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감사인과 기업의 공시책임을 강화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중개회
사법(가칭)』
제정의견

■ 중개회사제도 도입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 등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택저당증권 등에 대한 보증을 통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중개회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택금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①주택저당채권 유동화중개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

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중개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며, ③중개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매입,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및 지급보증업무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부대업무를 수행함. ④중개회사는 금융기관 등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을 위탁할 수 있고, 주택저당채권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채권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함. ⑤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한도는 주택저당채권의 매입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지급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20배로 함. ⑥중개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면 『민법』상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저당권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함. ⑦중개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수행하되, 주택정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증권거래법』
개정 의견

■ 자기주식취득제도 개선

현행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취득제도는 상장법인에 한하여 취득한도에 제한없이 유가증권시장을 통해서만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데, 시장내 취득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취득가격 및 취득수량을 제한하여야 함. 취득기간 중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취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일시에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공개매수가 바람직함.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과 금감위의 『상장법인의자기주식취득및처분신고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이외에 공개매수에 의한 취득도 허용함. 자기주식 취득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취득목적 및 상황에 따라 시장내 매수 또는 공개매수방법을 선택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 신종사채발행허용

현재 상장기업만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협회등록법인에 신종사채발행을 허용하여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이익첨가사채 등 신종사채를 코스닥 등록기업들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상장기업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대상을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확대함.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시 상장기업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코스닥 등록기업도 합병 등을 추진할 때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시 비상장기업은 합병주총 3개월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폐지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관련 특칙을 폐지하고 『상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 및 매수를 하도록 함. 투자일임업의 경우 지금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일임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증권관련집단
소송에관한법
률(가칭)』
제정의견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도입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도를 골자로 한 『집단분쟁처리절차법(가칭)』 제정 시도가 사실상 중단된 바, 증권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법기술상으로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포괄적인 집단소송제의 도입 보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도입이 훨씬 용이하고, 이미 국민과 국내외 투자자에게 약속한 사항으로서 도입을 지연하는 경우 우리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상실이 우려

되는 바,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고자 함. ①집단소송이 가능한 분쟁의 범위는 『증권거래법』에 열거된 손해배상의 특칙중 집단적 성격의 분쟁이 뚜렷한 경우인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발행인 등의 배상책임(제14조), 공개매수신고서등의 허위기재로 인한 신고자등의 배상책임(제25조의3),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발행인 등의 배상책임(제186조의5)에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함. ②민사소송중에서도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도록 하고, ③원래부터 당사자적격이 있는 피해자에 한하여 대표당사자 적격을 부여하며, ④피해자의 수가 일정수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용이하게 함. ⑤실질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상당부분 개별통지가 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시제도 등을 이용하여 상당수준의 고지가 가능함. ⑥손해배상액산정상의 특칙, 입증책임의 완화등 이미 『증권거래법』의 해당조항에서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제도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하고, 승소금 분배절차에 있어서는 피해자 확정 및 증권사계좌를 통한 분배가 용이함(국민회의 정책자료 98. 9. 1.).

『증권투자신탁
업법』 개정의견

■ 투자신탁안정기금의 설치

98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투신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투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조성·운용하고 있는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법제화하여 투신협회에 투자신탁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임의규정)을 두어 협회가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에 대해 출자 권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협회가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함. 규제완화를 위하여 투신사 임원기준을 폐지하되 단, 결격사유는 존치시키고, 재경부가 인가하던 영업의 일부양·수도를 금감위에 신고하도록 함. 계열사간 임직원의 파견·겸직 제한을 폐지하고, 투신사 지점설치시 금감위에 사전신고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함. 투자신탁협회의 업무규정 변경시 금감위가 승인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

합, 수익증권 발행시 금감위에 인가받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며, 영업보고서 보고의무를 완화하여 매월 보고하던 것을 매분기 보고로 전환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상거래 결제관행의 획기적 개선

①현금결제비율의 확대를 위하여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결제액 중 수급사업자별 납품액 대비 최소 현금결제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②어음요건의 강화를 위하여 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음 요건을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하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것”으로 개정하고 선일자 어음 발행 금지조항을 추가함. ③직권조사기능을 확충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조사기업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조사 내용 및 결과를 DB화함으로써 상시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④어음결제기간을 공시하여 은행별로 어음할인시 확보할 수 있는 개별기업들의 어음결제기간을 은행연합회로 집중시켜 이를 공시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용도 평가에 반영토록 함(국민회의 보도자료, 1998. 8. 13.).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의견

■ 생산제품의 민간판매 허용

조폐공사의 특수한 제조기술, 설비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영혁신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비화폐부문에 있어서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①일부 생산제품(특수용지·특수인쇄물·특수압인물)의 경우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게만 제조·수출이 가능하던 것을 국내외의 「민간」에게도 판매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위탁·기타계약에 의한 기념주화·기념은행권

의 판매를 허용함. ②국내의 관련기관·기업 및 단체와 물품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 협력을 업무범위에 추가함. ③조폐공사 자회사 설립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조폐공사의 기본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게 함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한국주택금융
주식회사법(가
칭)』 제정의견

■ 한국주택저당금융주식회사 설립

주택산업의 장기침체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공신력있는 주택저당채권 유통화중개기관인 「한국주택저당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와 증권화를 촉진함으로써 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택금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하여 ①동 회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이상으로 하되, 주택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연금기금, 대한주택공사, 주택사업공제조합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도 일정 요건하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기업집단 또는 개별 금융기관의 지배를 막기 위하여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함. ②정부의 지도·감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장과 상임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회사의 주요 업무로는 주택저당채권 및 중도금대출채권의 매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보유 및 매매,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주택저당채권의 수탁업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함. ③유통화중개기관이 주택대출금융기관의 신용을 보완하고 금융시장에서 최소비용으로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가신용도에 준하는 높은 공신력 보유가 필수적이므로 회사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정을 두어,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하여 필요시 정부에서 지급보증 또는 인수하도록 하여 회사의 유동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회사의 누적결손금이 납입자본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가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도록 하며, 매년 회사로부터 독립된 내·외국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에 대해 감사하도록 함(국민회의 보도자료, 1998. 8. 4.).

『화재로인한재
해보상과보험
가입에관한법
률』 개정의견

- 운영의 자율성 제고
한국화재보험협회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화보험회의 임원선임시 금감위의 승인을 폐지하고 대신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통상 · 산업

안전관리규제
관련 입법의견

- 안전관련법 일원화
현재 사업장의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관련법률이 8개부처 21개로 각종 안전관리규제법의 법시행 주체가 너무 많고 중복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를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정부의 안전관리정책과 집행기능을 조절 통제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함(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 98. 8. 10).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개정 의견

- 환불보증금 공탁제도의 단순화
통신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이 10일내 반품이나 환불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문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물품의 과다구입 원인이 되었던 다단계 판매원의 청약철회 권한에 일정한 기간 제한을 함. 현재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는 다단계 업계의 환불보증금 공탁제도를 대폭 단순화하여 판매원이나 소비자들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산업자원부, 98. 7. 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요건

■ 보증제도상의 미비점 보완

농림수산업의 기업화 추세에 맞추어 농림수산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대상을 추가하여 농어민들에 대한 보증편의를 제공하며, 기타 보증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①보증대상 농림수산업자의 범위를 현행 농림어업인 및 관련단체,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 등에서 농림수산물 수출중소기업, 농림수산기자재 제조 중소기업, 인삼경작자, 원양어업자로 확대하고, ②보증대상 자금의 범위를 조정하여 현행 금융기관 대출금에서 영농어자재 외상매매대금 및 판매선도금 등의 채무를 추가함. ③보증료를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규제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 의 내용, 매일경제 98. 10. 29.).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개정요건

■ 농수축산물 유통개혁대책

농수축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예시가격제, 출하선택권, 적정생산체제등을 구축하여 생산자는 제 값을, 소비자는 값싸고 신선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가격 변동이 극심한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 주요 품목에 대한 예시가격을 정부가 사전에 공표하여 생산농민이 최저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농협이 고랭지 및 김장 무·배추 재배면적의 10%이상 포전매취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함. ②농림부 산하 독립기구로 '중앙농업관측소(가칭)'를 설치하고 정보조사 실명제를 도입하여 품목별 관측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농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③포전매매에 따른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표준계약서제도를 도입하고 매매계약 후 수집상이 계약서상 수확개시 5일 이내에 정산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완전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생산자가 임의처리 하더라도 민·형사상

의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함. ④가동을 저조, 관리비용 과다, 목적 외 사용 등 기존의 대규모 산지 저온저장시설(약100~200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어가 영농규모에 맞는 소규모(약 10평 정도) 또는 컨테이너형 저온저장고를 설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⑤저장성이 약하여 출하조절이 곤란한 무·배추를 산지에서부터 절임작업 후 반가공품 상태로 진공 소포장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주산지별로 가공공장(절임·양념)을 시범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함. ⑥공영도매시장내에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의 영업을 허용하고, 주요도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제공, 농·수·축협에서 건축비 부담, 생산농민이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을 개설·운영토록 함으로써 실질적 직거래 체계를 확립함. ⑦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상장경매제 원칙에서 '매상제와 경매제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도매 유통마진을 약 10%이상 절감하고, 특히, 현재 건설중인 서울 서남권 도매시장은 개혁된 거래제도에 의한 공영도매시장의 표준모델로 육성 발전시킴. ⑧현행 『농수산물유통거래및가격안정에관한법』은 유통인의 기능을 엄격히 제한하여 다단계 유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도매시장법인에게 수탁판매는 물론 창고업·수출입업을 허용하여 종합유통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규모화 된 중도매인에게는 도매상을 허가하며 누구든지 일정 조건만 갖추면 경매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유통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⑨전국 농수축산물 유통량의 41.7%를 점유하고 있는 유사도매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개설과 같은 효과를 도모하겠으며, 거래내역의 투명성 확보, 시설 현대화 추진 등 실질적인 관리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 ⑩수산물은 산지 위판장에서는 경매제를 원칙으로 하되, 소비지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상제를 도입하여 물류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내 저온창고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급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⑪축

산물은 LPC(축산물종합처리장)를 재배치하고, 육류센터를 건립하여 기존의 지육, 비규격, 정육점 판매체계를 포장육, 규격, 소매점 판매체제로 전환하여 일반 소매점에서도 육류 판매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산지의 소 가격과 소비자의 쇠고기 가격이 연동되도록 하고, 시유(우유)는 현행 대리점 체제를 개선하여 대리점을 경유하지 않고 대형판매장과 직거래하고 복합대리점제를 도입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약 20% 절감함. ⑫양곡부류는 저장성이 강하여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연중 가격진동폭이 적으므로 자유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실제 양곡유통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혁함. ⑬유통개혁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상시적인 점검과 각 부처간 의견조율을 도모함. 시장기능에 의한 유통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통인의 자질 향상이 요구되므로 일정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농수축산물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도매상 설립 요건과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연계하여 운영함(국민회의 보도자료 1998. 8. 21.).

■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방안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 9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예시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1년전에 가격을 미리 고시한 뒤 시중시세가 예시가격보다 낮더라도 농민들은 생산자단체가 적립한 기금을 통하여 예시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경매제 중심의 공영도매시장 운영 체제를 개선, 경매제 이외에 생산자→도매상→소매상인으로 연결되는 도매상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도매유통 마진을 10%가량 절감하도록 할 방침임. 고랭지 채소와 김장 무, 배추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협이 이들 생산품의 재배면적 10%이상을 사전에 '밭떼기'(포전매매)로 사들이도록 의무화함. '밭떼기' 거래를 할 때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수집상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생산자가 농산물을 임의 처리하더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도록 할 방침임. 양곡(쌀) 도매제도도 고쳐 일정자격을 갖춘 양곡도매상에게 양곡 수탁판매, 수출입업 등 양곡

자유거래를 완전히 허용하고 우유에 대해서는 대리점을 경유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대형판매장을 허용하기로 함(국민회의, 98. 8. 21.).

『연안어장환경
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자율관리권 부여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건전한 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상태가 우수한 청정해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어업인들이 어장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환경오염이 심화된 관리해역(환경관리해역, 어업제한관리해역)은 어장의 환경회복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휴식을 실시하고, 휴식기간중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정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아울러 어업면허에 대하여 일제 갱신을 실시하여 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어장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장정화 전문업체에게 위탁 실시함(연안어장환경관리법 제정안, 해양수산부 어업진흥국 양식어업과, 1998. 9. 25.).

건설·교통

『도시개발법
(가칭)』
제정의견

■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의권 등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은 물론 도시주변의 준농림, 준도시지역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건교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민·관합동법인이나 건설업체, 주택업체, 토지소유자, 조합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함. 민간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의권도 주어 민간이 개발구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내면 지자체는 타당성을 따져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민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함(건설교통부, 경향신문 98. 10. 1.).

■ 도시개발법 제정안

주택단지·공업단지 조성등 현행 특별법 위주의 단편적인 도시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민간의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재개발법』상의 도시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법』상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시가 지 조성사업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관련법간의 중복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며,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도시개발법(가칭)』을 제정하고자 함.

<도시개발관련 특별법의 신규제정 억제>

현재 기존 도시개발법령으로는 교육·문화·역사·생태·정보·통일 도시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필요시마다 각 부처에서 특별법의 제정수요가 발생하므로(『유통단지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관광위락단지)』, 『멀티미디어폴리스육성을위한특별법(안)』,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제정 움직임 등) 법(안)에서는 다른 부처도 업무와 관련한 특수한 목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 『도시개발법』을 통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과 관련된 특별법의 신규제정을 억제하고자 함(△역사·문화 또는 관광위락단지 → 문화관광부 △교육·연구도시 → 교육부, 환경·생태도시 → 환경부 △산업도시 → 산업자원부, 정보도시 → 정보통신부)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허용>

현재까지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 민간참여를 제한하여 왔고, 이에 따라 민간의 아이디어 및 자본·기술이 도시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왔으나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허용으로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①민간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인정하여 제3섹타(민관합동법인), 건설업체 또는 주택업체, 토지소유자, 조합의 형태로 참여가능하게 하고, 신탁사업자도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 ②사업 시행자 선정시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개발밀도, 경제성 등을 분석한 '도시개발 의향서'를 공모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최적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민간에게 도시개발구역지정건의권 부여〉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이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으나, 법안에서는 민간에게 '개발구역 지정 건의권'을 부여하여 민간이 개발구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구역지정을 건의한 민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건설업자 또는 주택업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건의하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 외국인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 자본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며,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에게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함.

〈도시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유도〉

현행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도시지역내에서만 개발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안에서는 도시주변지역에 대한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준농림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의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존의 도시개발제도는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에 대한 입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외국의 도시와 비교하여 도시환경과 미관을 고려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법안에서는 도시개발시 '상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필지의 규모, 건축

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고려한 입체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선진국형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

〈도시개발 절차의 간소화〉

현행 법 체계하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먼저 국토이용 계획 및 도시계획의 변경, 농지전용허가·건축허가 등 수많은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법안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건축허가 등 33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함(약 15개월).

〈도시개발 지원수단의 다양화〉

지금까지의 도시개발방식은 환지 또는 전면매수등 한가지 방식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나, 법안에서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환지, 전면매수 또는 혼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등〉

도시개발사업비의 보조·융자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은 도시개발채권, 도시계획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 부담금 등으로 조성함.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사업시행후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토지상 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지방세와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 무상양도 범위 확대〉

『도시계획법』에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하천·광장·주차장등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무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있을 경우

시설의 종류별로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안에서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도로→도로, 하천→하천),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부지를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안에서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함(도로→하천, 하천→도로).

: 이상 건설교통부, 도시개발법(안), 1998. 10. 1.

※ 주택건축분야 규제완화책(130개)

법령 (시행예정)	규제완화내용
주택건설촉진법 (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결정제도 폐지 - 지정업자제도 폐지 - 도로, 상하수도 설치방법 개선 - 전매제한제도 폐지 - 주택자재 생산업등록제도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98년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전면 폐지 - 2주택이상 소유자의 민영주택 1순위제한 폐지 - 국민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 청약배수제 폐지 - 민영주택의 무주택우선공급 폐지(1순위에 포함) - 무순위분양폐지(1~3순위 분양후 바로 선착순 분양) - 아파트 복리시설 분양방법 자율화(추첨 및 공개경쟁에 의한 분양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99년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비 금융기관 예치제도 폐지
주택건설기준등 에 관한 규정 (99년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지내 유치원 설치기준 폐지 - 비상 급수시설 설치기준 폐지 - 3,000세대이상 주택단지 동사무소용부지 확보 기준 폐지 - 5,000세대이상 주택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기준 폐지 - 상가용도를 생활편익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확대
택지개발촉진법 (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 택지 환매제도 폐지 - 분묘등의 이장·이전 명령제도 폐지

<p>공동주택관리령 (98.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관리사 20세대→150세대 - 16층이상 아파트의 안전점검 실시 주체를 안전진단업체 → 주택관리사 -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인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과 위탁관리업자의 선정 → 입주자가 결정 - 회계감사의무를 폐지 - 관리사무소의 직원 연대보증의무 폐지(2년)에 대한 제한 폐지 - 자본금규모와 실적에 따라 구분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업무범위를 폐지 - 전세입자에게도 동대표권의 선거권을 부여
<p>건축법 (9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제 폐지 - 대형건축물(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에 대한 시·도지사 허가전 승인제도 폐지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 폐지 - 건축허가시 관련법률에 대한 통합기준마련·고시 - 건축허가권자의 허가 거부권 규정 폐지 -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기준 개선 등 -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 폐지 - 한국산업규격(KS)제품 사용의무화 폐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견

■ 도청남용의 방지

긴급감청의 경우 일단 감청하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데, 기각되더라도 이미 목표로 하는 감청은 이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청이 되고, 이는 중대범죄인 바, 도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함.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감청은 최소한의 필요에 그쳐야 함(안상수 한나라당 대변인, 한국일보 98. 10. 19.).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주요골자로 △긴급감청 폐지 △감청시설과 장소의 국회신고 및 감청내용 사후보고 △불법도청 처벌강화 등이고, 수사기관이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 불필요하게 감청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일반범죄수사의 경우

3개월, 국가안보수사의 경우 6개월까지로 되어 있는 감청 기간을 각각 1개월과 2개월로 단축함. 특히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전화감청부터 먼저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영장을 청구해 사후허가를 받도록 한 긴급감청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음(한나라당, 국민일보 98. 10. 19.).

- 수사기관이 긴급한 사유로 통신감청을 하고 법원의 허가가 요구되는 48시간 이내에 목적을 달성, 법원의 허가가 필요없게 된 경우라도 사후에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해 탈법적인 긴급감청 소지를 없애고자 함(박상천 법무장관, 서울신문 98. 10. 20.).

환 경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의견

- 공유수면 매립지 용도변경 제한기간 연장
매립지 소유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땅값 상승분에 해당하는 매립지를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면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이 허용됨. 매립기본계획도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매립 전후의 경제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결정됨(해양수산부, 경향신문 98. 11. 20.).

『폐기물관리법』 개정의견

- 법개정의 기본방향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상황 및 여건의 변화에 맞춰 기존 규정들을 계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자,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리에 이르는 처리경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며 △문제가 되어온 소형소각시설로 인한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소형소각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불요불급한 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그 질을 높여 합리화함(심재곤 환

경부 폐기물자원국장, 『환경자치실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공청회』 발제문, 1998. 11. 20.).

■ 폐기물처리 영업구역 제한

폐기물처리 영업구역 제한의 폐지는 폐기물의 집중을 부르고, 환경법상 오염원 분산의 원칙에도 반하는 바, 자연보전이나 오염통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 편이 바람직함. 입법기술의 측면에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조문의 표현양식을 바꾸어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가 불이익 당할 가능성을 예방하여야 함(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환경법팀장, 『환경자치실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공청회』 발제문, 1998. 11. 20.).

■ 폐기물관계법의 통합

① 폐기물관계법을 『폐기물법(가칭)』으로 통합하고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규제분야별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법령이해를 증진하고 법령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이 바람직함. 『폐기물법(가칭)』에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을 선언하여 폐기물관계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폐기물관계법이 형식면이나 내용면에서 보다 체계화되도록 하여 법령 상호간의 모순과 법령의 불비를 방지하고 법령의 이해를 제고함. ② 폐기물의 분류에 있어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소형인 경우에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함. 다만, 유해성이 없는 일반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최종폐기물개념을 도입하여 폐기물의 자원화우선원칙을 보다 철저히 법제화하여야 함. ③ △폐기물의 처리책임에 있어서는 근접지처리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원칙상 기초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부여하며 폐기물의 광역적 처리는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장폐기물에 있어서는 환경적으로 적정한 처리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배출사업자에 의한 자가처리보다는 전문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한 처리를 장려하여야 할 것임 △배출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처리가 억제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토지양수인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자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제조자와 유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박균성 경희대학교수, 『환경자치실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공청회』 발제문, 1998. 11. 20.).

보건 · 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의견

■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로연금제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① 경로연금 수급권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고(안 제9조제1항), ②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33조의2), ④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함(안 제35조제6항). ⑤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입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46조제5항), ⑥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를 폐지하며(안 제46조), ⑦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 이상 노인복지법중 개정 법률(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노인복지과, 1998. 10. 15.

『의료보호법』

개정안

■ 진료기관의 지역성 폐지

의료보호 환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환자들이 1, 2, 3차

병·의원으로 이동하는 진료절차만 준수하면 어느지역에 있는 진료기관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함. 의료기관이 개설되면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당연지정하여 별도의 지정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함(보건복지부, 98. 9. 4.).

『화장품법
(가칭)』
제정의견

- 화장품관련 독립법 제정 추진
- 현행 『약사법』에서 화장품 관련조항을 분리하여야 함. 외국 규정과 국내 다른 법규를 참고하여 국민보건과 화장품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화장품법(가칭)』을 마련하여야 함 (총회 98. 7. 6.).

법원 · 법무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가정폭력법의 실효성 제고
- ①당장의 가정폭력범죄 신고와는 전혀 무관하게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을 피해자가 직접, 혹은 변호사를 통하여 언제든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②법 제4조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그중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각종 상담기관 등에서 직무상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바,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 등 적절하게 제재조치하고, 이웃이나 위 기관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 경우 보복을 가한 자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는 처벌규정도 마련되어야 함. ③법 제5조에서는 가정폭력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으나 즉시가 언제까지인지, 출동을 안하면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이의 보완이 요망됨. ④법 제9조로 가정폭력범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검찰은 종래처럼 일반 형사처벌이나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고 위 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게 되었으나, 세 가지 종류의 처분 중 과연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가

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자칫 검찰이 재량권을 남용할 여지를 주고 있음(이명숙 변호사, 여성개발소식 제148호, 1998. 9.).

『법무사법』

개정 의견

-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독점 규제
등기서류 작성 등은 업무 성격상 이 분야에 조금만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무사만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법무사가 업무를 독점하도록 하고 있는 『법무사법』은 진입규제의 소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므로 이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공정거래위원회, 98. 8. 7).

『변호사법』

개정 의견

- 각 지방변회의 자율성 제고
『변호사법』상의 지방변호사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각 지방변회를 변호사들의 자율단체로 운영하게 하는 것과 변협의 변호사등록업무와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함. 변호사단체의 단일화를 피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대한 변협만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지방변호사회는 그 설립과 운영을 자율화 한다는 명목으로 지방변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변호사법 제49조부터 제60조에 이르는 지방변호사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설립 및 가입강제주의와 관련해서는 변호사협회보다 공공성이 강한 공증협회도 설립과 가입이 임의화 되어 있는바, 변호사회의 설립과 가입 역시 임의화 하고, 법 제61조 규정중 '대한변호사회를 둔다'를 '대한변호사회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함. 현재 대한변협이 갖고 있는 징계권과 관련해서 변협징계위원회는 회원들에 대한 징계중 '견책'만을 담당하고, '제명', '정직', '과태료' 처분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하고, 등록업무 역시 변호사개업시 종래 변협에 등록하던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규제개혁위원회, 법률신문 98. 10. 26).

■ 가족법 개정안

〈동성동본 불혼제도의 폐지〉

동성동본 불혼의 규정(제809조제1항)은 남계혈통 중시의 규정으로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혼인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더 이상 존치될 수 없음. 근친혼을 금지하는 중요한 이유는 윤리적·우생학적 측면에서 문제되는 것인데, 동성동본 불혼제도는 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 당연히 삭제하고 근친혼 규정으로 대체되어야 함. 개정안은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친양자의 종전의 혈족을 포함함)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했으며, 인척 사이의 혼인과 양부모계의 혈족 사이의 혼인에 대해서는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함. 동성동본 불혼의 규정은 이미 1997년 7월 1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그 적용이 중지됨.

〈재혼금지기간의 삭제〉

재혼금지기간의 규정(제811조)은 여성(女性) 추정이 충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 『민법』에 두어졌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DNA 감정의 발전으로 친자관계의 감정에 정확성이 100%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더 이상 존치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함.

〈친생부인제도의 개선〉

친생부인제도는 남편만이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846조), 그 부인권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함으로써(제847조), 혈연진실주의와 부부평등의 이념에 배치되고 있었던 바, 이념에 부합하고자 개정안

은 처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하고,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친생부인에 관한 제 847조제1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1997년 3월 27일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그 적용이 중지됨.

〈친양자(완전양자) 제도의 신설〉

현재의 양자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친생부모 등과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가지며,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완전양자라고도 함)제도를 신설함은 양부모와 친양자를 친생자처럼 더욱 긴밀히 밀착시킴으로써 친양자의 복리를 도모하고자 함.

〈친권제도의 개선〉

개정안은 친권행사의 기준으로 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무규정을 두면서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와 이혼한 부모의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자의 복리를 지키기 위한 것임.

〈부양상속인의 상속분 가산〉

개정안은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에 대한 상속분은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조정하여 가족관계의 새로운 가치관을 조성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상속회복청구제도의 개선〉

현행법상의 상속회복청구제도에 있어서 그 권리의 존속(제척) 기간이 짧아서 진정한 권리자인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이 보호되지 않는 흠이 있는 바, 개정안은 제척기간을 연장시켜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개정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이 충분히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정단순승인제도의 개선〉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에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정안은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 단순승인 포함)한 경우에는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상 김주수 경희대 객원교수, “가족법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여성개발소식 148호, 1998. 9.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 법률』 개정안

■ 몰래카메라 처벌 근거마련

몰래카메라의 설치·촬영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근거가 없어서 단속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나 비디오를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설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권영자 한나라당의원, 98. 7. 3.).

〈주요항목 색인〉

(ㄱ)

가정폭력법의 실효성 제고	77
가족법 개정안	79
각 지방변회의 자율성 제고	78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도입	53
경영의 자율성 제고	51
공시책임의 강화	58
공유수면 매립지 용도변경 제한기간 연장	74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지주회사 허용방안	42
공정거래법 개정권고안의 주요내용	40
교수임용제 개선안	34
교원노조 단협체결권 인정	35
교원노조 법제와 미합의 쟁점	36
교원의 노동권 확대	35
국민연금기금의 의무예탁 단계적 축소	37
금융기관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56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52
기업접대비 관련 규제 강화	54

(ㄴ)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	76
농수축산물 유통개혁대책	65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방안	67

(ㄷ)

도산관련법의 주요 개정사항	38
도산법제 통합으로 파산절차지연 최소화	50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의권 등	68
도시개발법 제정안	69
도청남용의 방지	73

(□)

몰래카메라 처벌 근거마련	81
민간단체의 지원	25

(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의견	33
방송법 개정의견	32
방재기본계획	27
법인세 1% 정치자금 검토	23
별도 관리기구 설치	23
보수상한 승인제도 폐지	38
보증제도상의 미비점 보완	65
보험회사의 영업허용	49
부가가치세제의 개편방안	53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52

(ㄴ)

사전신고제 폐지	54
상거래 결제관행의 획기적 개선	62
생산제품의 민간판매 허용	62
소관부처의 일원화	25
소득세 과세방식의 전환	54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독점 규제	78
신고의무등의 폐지	55
신종사채발행허용	60

(ㅇ)

안전관련법 일원화	64
어음제도개선 정책대안	55
영업양도의 사전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완화	51
운영의 자율성 제고	64
은행경영의 건전성 제고	56
인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	38

인가제도 폐지	37
---------------	----

(ㄱ)

자기주식취득제도 개선	59
자산·부채 실사 정보 공개	49
자율관리권 부여	68
정부규제 철폐	51
조합원명부 비치의무 폐지	54
주민참정권 강화	30
주택저당채권의 증권화	57
중개회사제도 도입	58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도입	60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내용	31
진료기관의 지역성 폐지	76

(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73
투자신탁안정기금의 설치	61

(ㄷ)

평생교육기관의 부설·운영	34
폐기물관계법의 통합	75
폐기물처리 영업구역 제한	75

(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의견	33
한국방송공사법	33
한국주택저당금융주식회사 설립	63
한일신어업협정	24
화장품관련 독립법 제정 추진	77
환불보증금 공탁제도의 단순화	64

입법의견조사 98-3 입법의견동향

1998년 12월 26일 印刷

1998년 12월 31일 發行

發行人 徐 承 完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 亞 商 社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전화:(02)579-0090, FAX:(02)579-2380

등록번호 : 1981. 8. 11 제1-a0190호

값 5,500 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86-X 9336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 10/10/10